



식품의약품안전처

식품의약품안전처

수신 수신자 참조

(경유)

제목 소비기한 표시제도 선적용 가능 및 계도기간 부여 알림

1. 식품안전관리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.
2. 소비자 정보제공, 식품폐기 감소, 국제적 추세 등을 반영하여 식품등의 '유통기한' 표시제가 '소비기한' 표시제로 변경되는 「식품 등의 표시·광고에 관한 법률」이 개정('21.8.17)되어 **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**될 예정입니다.
3. 다만, 시행일에 맞추어 다품목의 포장지 변경이 현실적으로 어렵고, 기존 포장지 폐기나 스티커 부착 등 비용부담과 자원낭비가 우려됨에 따라, 산업계 부담 및 자원 낭비를 줄이고 제도의 안착을 위해 ①**시행일 이전에도 소비기한을 표시하고자 하는 영업자는 선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**하고, ② '유통기한'이 표시된 기존 포장지를 스티커 처리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**계도기간(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)을 부여**하고자 합니다.
4. 계도기간 동안 기존 포장지를 소진하고 새로운 포장지로 교체할 수 있도록 관련 영업자 등을 계도하여 소비기한 표시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5. 아울러, 소비기한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·홍보 자료를 식품안전나라 (<http://foodsafetykorea.go.kr> > 식품·안전 > 식품표시광고 > 소비기한)에 게시하고 있으니 관할 영업자·소비자를 대상으로 **교육·홍보에 적극 활용**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붙임 : 소비기한 표시제 선적용 및 계도기간 부여 설명자료 1부. 끝.

식품의약품안전처장



수신자 본부 및 평가원, 지방청, 관계 부처, 시·도 관련 부서, 관련 협회·단체, 보건복지위원회 등

주무관 **손진혁** 연구관 **문재은** 식품표시광고정 책과장 **오재준** 전결 2022. 8. 11.

협조자

시행 식품표시광고정책과- (2022. 8. 11.) 접수
11863

우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, 오송생명과학 / www.mfds.go.kr
단지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국 식품표시광고정책과

전화번호 043-719-2189 팩스번호 043-719-2180 / sontoly33@korea.kr / 대국민 공개